

서울고등법원 2017. 5. 26 선고 2016나20467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7. 5. 26 선고 2016나204671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30 선고 2015가합52236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변호사 B

피고, 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7. 4. 26

판결선고 2017. 5. 26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5가합52236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중부등기소 2014.

10. 1. 접수 제4377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3쪽 21행~4쪽 1행의 "국립서울병원장은"을 "국립서울병원 소속 감정의E은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4쪽 7행의 "2014. 10. 5."을 "2014. 10. 15.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4쪽 16행의 "국립서울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검사일은"을 "국립서울병원에서의 검사일은"으로 고친다.

2. 추가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의 성년후견인 B이 2015. 8. 31. 작성한 보고서(이하 '이 사건 보고서'라고 한다)에 따르면

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,그로부터 약 11개월 전인 2014. 10. 1.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원고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

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.

나. 판단

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보고서는 단지 원고가 "현 상태에서 자식들이 잘 살아가고 식당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"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을 뿐이고,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우진판사 송석봉판사 최은정